

「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6. . .

제 출 자 :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은 대행 가능한 사무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탁사무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조례의 조문 일부를 수정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함.
 - 제9조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등의 대행)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·운반 또는 처리를 **대행하게 할 수 있다.** ~~이 경우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의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회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~~

「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**있으며**,”를 “**있다**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.	(개정안과 같음)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<u><신설></u>	8. “생활계 유해폐기물”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	(개정안과 같음)

	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16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.	
제6조(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)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·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.	제6조(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) ① 생활폐기물(종량제봉투 배출 대상), 음식물류 폐기물, 대형폐기물, 연탄재, 생활계 유해폐기물, 재활용 가능 폐기물(이하 “재활용품”이라 한다)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배출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.	(개정안과 같음)
② 연탄재,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시간·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.	<삭 제>	(개정안과 같음)
③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④ 재활용가능 폐기	<삭 제>	(개정안과 같음)

물(이하 “재활용품”
이라 한다)은 별표
2의 배출 방법에 따
라 분리하여 시장이
지정하는 시간·장
소 또는 용기에 배
출하여야 한다.

⑤ 생활폐기물 중
음식물쓰레기를 분
리·수집할 경우 음
식물전용 봉투에 담
지 않고 별도의 방
법으로 배출하게 할
수 있다.

⑥ ~ ⑧ (생 략)

⑨ 시장은 제1항부
터 제5항까지의 규
정에 따른 폐기물을
효율적으로 수집·
운반·처리하기 위
하여 폐기물의 종류
별로 수거일, 배출
장소, 배출용기, 배
출절차 등 재활용품
및 생활쓰레기 배출

<삭 제>

③ ~ ⑤ (현행과
같음)

⑥ ----- 제1항-----

-- 배출장소, 배출
용기, 배출절차 ---

(개정안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<u>요령</u> 등을 정할 수 있다.	----- --.	
제7조의2 (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)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생활폐기물 배출자</u>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종류별, 성질·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	제7조의2(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) ① ----- ----- <u>생활폐기물배출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(개정안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제9조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등의 대행)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<u>폐기물 처리업자</u>로 하여금 수집·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	제9조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등의 대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폐기물처리업자</u>----- ----- -----	제9조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등의 대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폐기물처리업자</u>----- ----- ----- <u>있다.</u>

「구미시 사무의 민 간위탁에 관한 조 례」의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구 미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.	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의 제6조제1 항----- ----- ----- -----.	(개정안과 같음)
1. <u>시</u>에서 보유한 인력 또는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 역 내의 생활폐기 물 수집·운반이 어려울 경우	1. <u>구미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(개정안과 같음)
2. 3. (생략)	2. 3. (현행과 같 음)	(개정안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 음)	(개정안과 같음)
④ 제3항에 따른 대 행비용의 명확한 산 정을 위해 <u>기획재정 부장관</u>으로부터 원 가계산기관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 여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<u>재정경제 부장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.	(개정안과 같음)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⑥ 제1항에 따른 대	⑥ -----	(개정안과 같음)

행업자는 법·영·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및 이 조 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 여야 한다.	----- 규칙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	
제9조의3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 전기준) 시장은 폐 기물관리법 시행규 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 다 만, <u>시행규칙</u> 제16 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.	제9조의3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 전기준) ----- 규 칙 ----- ----- ----- -----. - <u>규칙</u> ----- ----- ----- -----.	(개정안과 같음)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 음)	(개정안과 같음)
제11조(불특정 다수인 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) ① (생	제11조(불특정 다수인 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) ① (현	(개정안과 같음)

략)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,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「등산로·유원지 쓰레기통 설치·관리 규정」(환경부훈령 제270호)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,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제12조(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) ① (생략) ② 시장은 공동주택, 다가구주택, 다량 배출 시설 등 건축 허가 신고 시 법	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투기 금지를 위하여 ----- ----- ----- -----. 제12조(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	(개정안과 같음) (개정안과 같음)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생활폐기물배출자-

제14조(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)

① (생략)

② 종량제봉투의 형태, 재질,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 반투명으로 제작한다.

③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5리터, 10리터, 20리터, 50리터, 75리터로 한다.

④ 제3항의 봉투용
량 중 20리터 봉투
는 음식물쓰레기전

제14조(종량제봉투의
종류 및 재질 등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기후에너지환경부-----

③ 종량제봉투----

④ -----
----- 음
식물류 폐기물 전용

(개정안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용 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봉투색깔은 일반용 봉투와 달리 제작할 수 있다.

제16조(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) ① ~ ⑦ (생략)

<신설>

-----.

제16조(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시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량제봉투,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,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 종량제 관련 물품의 제작·유통·판매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

(개정안과 같음)

(개정안과 같음)

	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 된 출자·출연기 관	
제17조(수수료의 감면) ① (생략)	제17조(수수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주기는 규칙으로 정한다. 다만,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구 미시 폐기물관리 조 례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 다)---. -----.	(개정안과 같음)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제20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	제20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②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	② ----- -----	(개정안과 같음)

며 공무원, <u>시의원</u> , 학계, 환경단체, 여 성단체, 폐기물관리 에 관심이 많은 일 반 시민 등으로 성 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	----- <u>구미시</u> <u>의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(개정안과 같음) 같음)	
제2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<u>규칙</u> 으로 정 한다.	제23조(시행규칙) -- ----- ----- <u>시행규칙</u> - -----.	